

#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
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-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-
-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-

2월 6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.

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먼저,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‘5천만 원’에서 ‘1억 원’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.(시행령 별표4 개정)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(9만 2천 원→6만 8천 원)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다음으로,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.(시행령 제42조, 별표4 개정)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.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\*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.

\* 333만 세대 = 재산 인하 세대(330만 세대) + 자동차 인하 세대(9.6만 세대) - 중복세대(6.6만 세대)

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.

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.

보건복지부 이종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말하면서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-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별첨>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	책임자	과장	조충현 (044-202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안정습 (044-202-2706)

